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2006. 6. 29일자로 공포, 2006. 7. 1일부터 시행되어
- 나.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의 구분(증명)란중 제3호 및 제6호 수수료 등을 조정

- 남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통 500원 ⇒ 800원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500원 ⇒ 800원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호 500원 ⇒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 신설)

3. 관계법령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2006. 7. 1일부터 시행되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과 관련하여 남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발급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호 5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으로 하며 단,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